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

보도자료

보도

2018. 7. 2.(월) 조간

배포

2018. 6. 29.(금)

담당부서

외환감독국

변귀섭 팀장 (3145-7938) 박재만 선임검사역 (3145-7993)

제목 : 금융꿀팁 200선 - ⑩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(해외직접투자편)

-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(금융꿀팁)를 선정,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안내하고
 - 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“파인”(fine.fss.or.kr)에도 게시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90번째 금융꿀팁으로, “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(해외직접 투자편)”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
 -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(http://www.fss.or.kr/fss/kr/info/exchange/exchange_info.jsp)

<별첨> 금융꿀팁 200선 - ⑩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(해외직접투자편)

금융감독원은 「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‘금융관행 개혁 포털’(<http://better-change.fss.or.kr>) 내 ‘국민 참여방’으로 제보 바랍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1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보고 의무

- (신고의무)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*해야 함 (외국환거래규정 제9-5조 이하)

* 최초 해외직접투자 뿐 아니라 증액하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사항에 해당

- 사전신고 대상에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금을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해외현지법인으로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거나, 휴대 반출한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해당함

■ 해외직접투자 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의무 대상

- ① **지분투자**(경영 참여 목적으로 투자비율이 10% 이상이거나, 투자비율이 10% 미만이더라도 임원파견,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)
- ② **대부투자**(이미 지분투자한 현지법인에 대한 1년 이상 장기 금전대여) 등

- (변경보고의무) 최초 해외직접투자시 신고하였더라도 기존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함

- 다만,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*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며

* 통상의 변경사유(상호, 대표자, 소재지 등의 신고내용의 변경)에는 변경사유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나 지분 매각의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함

- 거주자인 양수인은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사전에 하여야 함

- (보고의무)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에도 외화증권취득보고, 송금보고 등 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의무가 있고 청산 시에는 청산자금을 회수하여 보고할 의무도 있음

- 다만,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현지법인이 휴·폐업하여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면제됨

2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(해외직접투자편)

* 외국환거래법(제22조)상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례를 가공 처리함

사례1 해외직접투자 시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꼭 신고하세요!

* 기계, 설비, 토지 등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형태

- '13.6.1. 거주자가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 상당의 현물을 출자(지분율 20%)하면서,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⇒ 과태료(약 50만원)

□ (관련법규)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(외국환거래규정 제9-5조)

□ (현행 법규상 제재) 검찰통보(위반금액 10억원 초과), 과태료(위반금액의 2%, 최저 1백만원 부과), 경고(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), 거래정지(5년내 2회 이상 위반)

* 종전에는 50만원이 과태료 부과금액 하한이었으나, '17.7.18. 이후 과태료 금액이 상향(위반금액의 2%, 하한 1백만원)되어, 위 사례가 현재 발생할 경우 과태료 1백만원 부과 대상

☞ (유의사항) 거주자가 현지법인에 현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

사례2 해외직접투자 방식을 변경(대부투자→지분투자)하면 보고하세요!

- '18.2.1. 거주자가 홍콩 소재 현지법인에 1만달러를 대부투자하기로 하고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마쳤으나 현지 사정으로 지분투자로 투자 방식을 변경하였는데도,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변경보고를 하지 않음 ⇒ 과태료(약 700만원)

□ (관련법규) 해외직접투자자는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(외국환거래 규정 제9-5조 제2항)

□ (현행 법규상 제재) 과태료*(7백만원 정액 부과)

* 종전에는 변경신고 대상이었으나, '18.1.1.부터 변경보고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경고 처분대상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변경

☞ (유의사항) 거주자가 최초 해외직접투자 시 신고하였더라도 현지 법인에 대한 투자방식 변경 등 기존 신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 외국환은행에 변경내용을 3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

사례3 현지법인 지분을 양도하면 즉시 보고하세요!

- '18.1.1. 거주자(A)는 본인이 설립한 중국 소재 현지법인을 다른 거주자(B)에게 양도하였으나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를 누락 ⇒ 과태료(700만원)

□ (관련법규)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는 다른 거주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즉시 외국환은행에 보고하여야 함 (외국환거래규정 제9-5조 제2항 단서)

□ (현행 법규상 제재) 과태료(7백만원 정액 부과)

☞ (유의사항) 거주자가 현지법인 지분 일부*를 양도하여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즉시 변경보고하여야 함

- *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
- 또한 지분을 양수한 거주자는 현지법인 양수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함

사례4 증권취득보고서와 연간사업실적보고서는 기한 내 제출하세요!

- '14.9.1. 거주자가 미국 소재 현지법인에 20만달러의 투자금을 납입한 후 외국환은행에 외화증권취득보고서 및 연간사업실적 보고서를 미제출 ⇒ 과태료(200만원)

□ (관련법규) 해외직접투자자는 증권취득보고서,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*하여야 함 (외국환거래규정 제9-9조)

* 증권취득보고서 : 투자금액 납입 후 6월 이내, 연간사업실적보고서 :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

□ (현행 법규상 제재) 과태료*(14백만원 정액 부과)

* 종전에는 2백만원이 과태료 부과금액이었으나, '17.7.18. 이후 과태료 금액이 상향(7백만원)되어 위 사례가 현재 발생할 경우 과태료 14백만원 부과 대상

☞ (유의사항) 거주자는 신규 해외직접투자 시 사전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투자 후에도 외화증권취득 및 연간사업실적 등을 외국환은행에 기한 내 보고*하여야 함

* 다만,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현지법인이 휴·폐업하여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면제됨

사례5 해외직접투자를 청산할 때도 잊지말고 보고하세요!

- '16.1.1. 거주자가 필리핀 소재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비거주자에게 매각하였으나 외국환은행에 청산보고를 누락 ⇒ 과태료(100만원)

□ (관련법규) 해외직접투자는 청산보고서 등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(외국환거래규정 제9-9조)

□ (현행 법규상 제재) 과태료*(7백만원 정액 부과)

* 종전에는 1백만원이 과태료 부과금액이었으나, '17.7.18. 이후 과태료 금액이 상향(7백만원)되어 위 사례가 현재 발생할 경우 과태료 7백만원 부과 대상

☞ (유의사항) 거주자는 신규 해외직접투자 시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투자를 청산*한 경우에도 청산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외국환은행에 보고하여야 함

*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

<참고>

해외직접투자 단계별 의무사항

- (신고의무) 거주자가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함
- (변경보고의무)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,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의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해야 함
- (보고의무)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외화증권취득보고서, 송금보고서,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및 청산보고서를 기한 내 외국환은행에 보고해야 함

